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52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오세희 · 서삼석
허종식 · 위성곤 · 김한규
서영교 · 이해식 · 김남근
서영석 · 최혁진 · 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인증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 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2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 등) ① ~ ⑦ (생략)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신설></u>	<u>⑨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7조(벌칙) ① 삭제	제4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u><삭제></u>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	<u><삭제></u>

<u>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u> <u>를 한 자</u> 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삭제 3. (생략)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9조(과태료) <신설> <신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6. (현행과 같음) ③ ----- ----- -----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49조(과태료) ①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